

한국벤처투자 벤처펀드 사후관리 가이드라인 1차 개정 내역(안)

[Part1 : 공통사항] I. 목적 및 적용범위
(개정사항 없음)

[Part1 : 공통사항] II. 자펀드 운용

가이드라인 상 목차	주요 개정 내용					개정 사유						
	현행		개정안									
1. 회계감사인 선정	<p style="text-align: center;">① 자펀드 회계감사인 선정</p> <div style="border: 1px dashed gray; padding: 5px; margin: 5px 0;"> <p style="text-align: center;">< 자펀드 회계법인 자격요건 ></p> <p>1) 금융감독원 제출 최근 회계법인사업보고서 기준 공인회계사 수 20인 이상</p> <p>2) 최근사업연도 매출액 30억 원 이상</p> <p>3) 창업투자조합 등 벤처조합*에 대한 감사 유경험자(담당회계사) 우대</p> <p style="margin-left: 20px;">* 창업투자조합, 한국벤처투자조합, 신기술사업 투자조합, 벤처·중소기업 PEF, CRC</p> <p>※ 담당 회계사 참여제한</p> <p>· 감액가이드라인 미준수 등 업무 부실, 모태펀드 업무관련 비협조 및 중대한 비위사실 확인시 2년간 모태펀드 자조합 회계감사인 참여제한(홈페이지 공지)</p> </div>					- 개정법령 반영						
2. 투자조합 운용보고	<p style="text-align: center;">② 시기별 정기보고 항목 및 내용</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margin: 5px 0;"> <tr> <td style="width: 10%; text-align: center;">반기별</td> <td style="width: 10%; text-align: center;">고용현황</td> <td style="width: 10%; text-align: center;">반기 말일 + 7일</td> <td style="width: 20%;">투자기업의 개인 정보가 포함되지 않은 4대 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총 고용인원 및 청년(만15~39세) 고용인원 현황 자료</td> <td style="width: 10%; text-align: center;">4대 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고용현황</td> <td style="width: 10%; text-align: center;">VIC시스템 활용</td> </tr> </table>					반기별	고용현황	반기 말일 + 7일	투자기업의 개인 정보가 포함되지 않은 4대 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총 고용인원 및 청년(만15~39세) 고용인원 현황 자료	4대 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고용현황	VIC시스템 활용	- 기준규약 반영
반기별	고용현황	반기 말일 + 7일	투자기업의 개인 정보가 포함되지 않은 4대 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총 고용인원 및 청년(만15~39세) 고용인원 현황 자료	4대 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고용현황	VIC시스템 활용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margin: 5px 0;"> <tr> <td style="width: 10%; text-align: center;">분기별</td> <td style="width: 10%; text-align: center;">고용현황</td> <td style="width: 10%; text-align: center;">반기 말일 + 7일</td> <td style="width: 20%;">투자기업의 개인 정보가 포함되지 않은 4대 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총 고용인원 및 청년(만15~39세) 고용인원 현황 자료</td> <td style="width: 10%; text-align: center;">4대 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고용현황</td> <td style="width: 10%; text-align: center;">VIC시스템 활용 - 규약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 해당 규약 우선</td> </tr> </table>	분기별	고용현황	반기 말일 + 7일	투자기업의 개인 정보가 포함되지 않은 4대 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총 고용인원 및 청년(만15~39세) 고용인원 현황 자료	4대 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고용현황	VIC시스템 활용 - 규약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 해당 규약 우선	
분기별	고용현황	반기 말일 + 7일	투자기업의 개인 정보가 포함되지 않은 4대 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총 고용인원 및 청년(만15~39세) 고용인원 현황 자료	4대 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고용현황	VIC시스템 활용 - 규약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 해당 규약 우선							

가이드라인 상 목차	주요 개정 내용		개정 사유																																								
	현행	개정안																																									
4. 투자금 실사 및 보고	<table border="1"> <tr> <th>구분</th> <th>주요 내용</th> </tr> <tr> <td rowspan="2">투자금 사용용도 지정</td> <td> <ul style="list-style-type: none"> 투자금보고서에 기재된 투자금 사용용도를 투자계약서에 기재 </td> </tr> <tr> <td> <table border="1"> <tr> <th colspan="2">투자계약서 필수 기재사항</th> </tr> <tr> <td>- 투자금 사용처</td> <td></td> </tr> <tr> <td>- 투자금 사용처에 대한 실사 근거 및 제재방안</td> <td></td> </tr> <tr> <td>- 대상거래*를 인지할 수 있는 방안 및 발생 시 처리방안</td> <td></td> </tr> <tr> <td colspan="2">* 대상거래 : 제3자에게 자금을 대여하거나 제3자의 주식을 매입하는 행위</td> </tr> </table> </td> </tr> <tr> <td>투자금 실사</td> <td> <ul style="list-style-type: none"> 투자가 집행된 후 1년 이내* * 규약에 투자금 실사 기한이 1년 이내가 아닌 경우, 규약에 명시된 기한 내 투자금 실사를 진행 투자금 실사보고서를 VICS를 통해 모태펀드에 제출 실사결과를 영업보고서 등에 기재하여 조합원에게 보고 </td> </tr> <tr> <td>투자금 실사 결과 문제점 발생 시 조치사항</td> <td> <ul style="list-style-type: none"> 문제점 발견 시 투자금액 회수 등 조치내역을 모태펀드에 VICS 수사보고 </td> </tr> </table>	구분	주요 내용	투자금 사용용도 지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투자금보고서에 기재된 투자금 사용용도를 투자계약서에 기재 	<table border="1"> <tr> <th colspan="2">투자계약서 필수 기재사항</th> </tr> <tr> <td>- 투자금 사용처</td> <td></td> </tr> <tr> <td>- 투자금 사용처에 대한 실사 근거 및 제재방안</td> <td></td> </tr> <tr> <td>- 대상거래*를 인지할 수 있는 방안 및 발생 시 처리방안</td> <td></td> </tr> <tr> <td colspan="2">* 대상거래 : 제3자에게 자금을 대여하거나 제3자의 주식을 매입하는 행위</td> </tr> </table>	투자계약서 필수 기재사항		- 투자금 사용처		- 투자금 사용처에 대한 실사 근거 및 제재방안		- 대상거래*를 인지할 수 있는 방안 및 발생 시 처리방안		* 대상거래 : 제3자에게 자금을 대여하거나 제3자의 주식을 매입하는 행위		투자금 실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투자가 집행된 후 1년 이내* * 규약에 투자금 실사 기한이 1년 이내가 아닌 경우, 규약에 명시된 기한 내 투자금 실사를 진행 투자금 실사보고서를 VICS를 통해 모태펀드에 제출 실사결과를 영업보고서 등에 기재하여 조합원에게 보고 	투자금 실사 결과 문제점 발생 시 조치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문제점 발견 시 투자금액 회수 등 조치내역을 모태펀드에 VICS 수사보고 	<table border="1"> <tr> <th>구분</th> <th>주요 내용</th> </tr> <tr> <td rowspan="2">투자금 사용용도 지정</td> <td> <ul style="list-style-type: none"> 투자금보고서에 기재된 투자금 사용용도를 투자계약서에 기재 </td> </tr> <tr> <td> <table border="1"> <tr> <th colspan="2">투자계약서 필수 기재사항</th> </tr> <tr> <td>- 투자금 사용처</td> <td></td> </tr> <tr> <td>- 투자금 사용처에 대한 실사 근거 및 제재방안</td> <td></td> </tr> <tr> <td>- 대상거래*를 인지할 수 있는 방안 및 발생 시 처리방안</td> <td></td> </tr> <tr> <td colspan="2">* 대상거래 : 제3자에게 자금을 대여하거나 제3자의 주식을 매입하는 행위</td> </tr> </table> </td> </tr> <tr> <td>투자금 실사</td> <td> <ul style="list-style-type: none"> 투자가 집행된 후 1년 이내(단, 투자금 70% 미만 소진 시 2년 이내)* * 규약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규약이 우선 투자금 실사보고서를 VICS를 통해 모태펀드에 제출 실사결과를 영업보고서 등에 기재하여 조합원에게 보고 </td> </tr> <tr> <td>(신설) 단서 조항</td> <td> <ul style="list-style-type: none"> 투자 집행 후 1년 도래 시점에 업무집행조합원은 피투자 기업의 투자금 사용 내역을 확인하여 실사 진행 여부 결정 1) 투자금 70% 이상 소진 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규약에 따라 회계감사인과 투자금 실사 진행 2) 투자금 70% 미만 소진 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업무집행조합원은 투자금 미소진 사유, 향후 사용 계획 등을 조합원에 수사보고하고, 실사 기한을 최대 1년 연기 - 투자금 실사를 투자 집행 후 2년 이내 진행하고, 최종 실사 보고서를 조합원에게 보고 * 최종 실사보고서 결과가 투자금의 70% 미만 소진하는 경우, 업무집행조합원은 실사보고서 결과와 소진 계획을 조합원에게 수사보고하고, 추후 업무집행조합원 비용으로 투자금 재실사 진행 </td> </tr> <tr> <td>투자금 실사 결과 문제점 발생 시 조치사항</td> <td> <ul style="list-style-type: none"> 문제점 발견 시 투자금액 회수 등 조치내역을 모태펀드에 VICS 수사보고 </td> </tr> </table>	구분	주요 내용	투자금 사용용도 지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투자금보고서에 기재된 투자금 사용용도를 투자계약서에 기재 	<table border="1"> <tr> <th colspan="2">투자계약서 필수 기재사항</th> </tr> <tr> <td>- 투자금 사용처</td> <td></td> </tr> <tr> <td>- 투자금 사용처에 대한 실사 근거 및 제재방안</td> <td></td> </tr> <tr> <td>- 대상거래*를 인지할 수 있는 방안 및 발생 시 처리방안</td> <td></td> </tr> <tr> <td colspan="2">* 대상거래 : 제3자에게 자금을 대여하거나 제3자의 주식을 매입하는 행위</td> </tr> </table>	투자계약서 필수 기재사항		- 투자금 사용처		- 투자금 사용처에 대한 실사 근거 및 제재방안		- 대상거래*를 인지할 수 있는 방안 및 발생 시 처리방안		* 대상거래 : 제3자에게 자금을 대여하거나 제3자의 주식을 매입하는 행위		투자금 실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투자가 집행된 후 1년 이내(단, 투자금 70% 미만 소진 시 2년 이내)* * 규약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규약이 우선 투자금 실사보고서를 VICS를 통해 모태펀드에 제출 실사결과를 영업보고서 등에 기재하여 조합원에게 보고 	(신설) 단서 조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투자 집행 후 1년 도래 시점에 업무집행조합원은 피투자 기업의 투자금 사용 내역을 확인하여 실사 진행 여부 결정 1) 투자금 70% 이상 소진 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규약에 따라 회계감사인과 투자금 실사 진행 2) 투자금 70% 미만 소진 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업무집행조합원은 투자금 미소진 사유, 향후 사용 계획 등을 조합원에 수사보고하고, 실사 기한을 최대 1년 연기 - 투자금 실사를 투자 집행 후 2년 이내 진행하고, 최종 실사 보고서를 조합원에게 보고 * 최종 실사보고서 결과가 투자금의 70% 미만 소진하는 경우, 업무집행조합원은 실사보고서 결과와 소진 계획을 조합원에게 수사보고하고, 추후 업무집행조합원 비용으로 투자금 재실사 진행 	투자금 실사 결과 문제점 발생 시 조치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문제점 발견 시 투자금액 회수 등 조치내역을 모태펀드에 VICS 수사보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시점 확대 단서 조항 신설 본문 재배치
	구분	주요 내용																																									
	투자금 사용용도 지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투자금보고서에 기재된 투자금 사용용도를 투자계약서에 기재 																																									
		<table border="1"> <tr> <th colspan="2">투자계약서 필수 기재사항</th> </tr> <tr> <td>- 투자금 사용처</td> <td></td> </tr> <tr> <td>- 투자금 사용처에 대한 실사 근거 및 제재방안</td> <td></td> </tr> <tr> <td>- 대상거래*를 인지할 수 있는 방안 및 발생 시 처리방안</td> <td></td> </tr> <tr> <td colspan="2">* 대상거래 : 제3자에게 자금을 대여하거나 제3자의 주식을 매입하는 행위</td> </tr> </table>	투자계약서 필수 기재사항		- 투자금 사용처		- 투자금 사용처에 대한 실사 근거 및 제재방안		- 대상거래*를 인지할 수 있는 방안 및 발생 시 처리방안		* 대상거래 : 제3자에게 자금을 대여하거나 제3자의 주식을 매입하는 행위																																
투자계약서 필수 기재사항																																											
- 투자금 사용처																																											
- 투자금 사용처에 대한 실사 근거 및 제재방안																																											
- 대상거래*를 인지할 수 있는 방안 및 발생 시 처리방안																																											
* 대상거래 : 제3자에게 자금을 대여하거나 제3자의 주식을 매입하는 행위																																											
투자금 실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투자가 집행된 후 1년 이내* * 규약에 투자금 실사 기한이 1년 이내가 아닌 경우, 규약에 명시된 기한 내 투자금 실사를 진행 투자금 실사보고서를 VICS를 통해 모태펀드에 제출 실사결과를 영업보고서 등에 기재하여 조합원에게 보고 																																										
투자금 실사 결과 문제점 발생 시 조치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문제점 발견 시 투자금액 회수 등 조치내역을 모태펀드에 VICS 수사보고 																																										
구분	주요 내용																																										
투자금 사용용도 지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투자금보고서에 기재된 투자금 사용용도를 투자계약서에 기재 																																										
	<table border="1"> <tr> <th colspan="2">투자계약서 필수 기재사항</th> </tr> <tr> <td>- 투자금 사용처</td> <td></td> </tr> <tr> <td>- 투자금 사용처에 대한 실사 근거 및 제재방안</td> <td></td> </tr> <tr> <td>- 대상거래*를 인지할 수 있는 방안 및 발생 시 처리방안</td> <td></td> </tr> <tr> <td colspan="2">* 대상거래 : 제3자에게 자금을 대여하거나 제3자의 주식을 매입하는 행위</td> </tr> </table>	투자계약서 필수 기재사항		- 투자금 사용처		- 투자금 사용처에 대한 실사 근거 및 제재방안		- 대상거래*를 인지할 수 있는 방안 및 발생 시 처리방안		* 대상거래 : 제3자에게 자금을 대여하거나 제3자의 주식을 매입하는 행위																																	
투자계약서 필수 기재사항																																											
- 투자금 사용처																																											
- 투자금 사용처에 대한 실사 근거 및 제재방안																																											
- 대상거래*를 인지할 수 있는 방안 및 발생 시 처리방안																																											
* 대상거래 : 제3자에게 자금을 대여하거나 제3자의 주식을 매입하는 행위																																											
투자금 실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투자가 집행된 후 1년 이내(단, 투자금 70% 미만 소진 시 2년 이내)* * 규약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규약이 우선 투자금 실사보고서를 VICS를 통해 모태펀드에 제출 실사결과를 영업보고서 등에 기재하여 조합원에게 보고 																																										
(신설) 단서 조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투자 집행 후 1년 도래 시점에 업무집행조합원은 피투자 기업의 투자금 사용 내역을 확인하여 실사 진행 여부 결정 1) 투자금 70% 이상 소진 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규약에 따라 회계감사인과 투자금 실사 진행 2) 투자금 70% 미만 소진 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업무집행조합원은 투자금 미소진 사유, 향후 사용 계획 등을 조합원에 수사보고하고, 실사 기한을 최대 1년 연기 - 투자금 실사를 투자 집행 후 2년 이내 진행하고, 최종 실사 보고서를 조합원에게 보고 * 최종 실사보고서 결과가 투자금의 70% 미만 소진하는 경우, 업무집행조합원은 실사보고서 결과와 소진 계획을 조합원에게 수사보고하고, 추후 업무집행조합원 비용으로 투자금 재실사 진행 																																										
투자금 실사 결과 문제점 발생 시 조치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문제점 발견 시 투자금액 회수 등 조치내역을 모태펀드에 VICS 수사보고 																																										
<p>(본문 재배치)o 투자금 실사 비용 기준</p> <table border="1"> <thead> <tr> <th>비용 기준</th> <th>비고</th> </tr> </thead> <tbody> <tr> <td> 건당 100만원(VAT 별도) 이내 * 단, 출장비, 인쇄비 별도 협의 가능 </td> <td> 복수의 조합에서 공동투자 한 기업의 경우 공동으로 실사 진행 및 비용 분담 가능 * 단, 실사보고서에 조합별 투자 금액에 대한 실사 내용 구분 표기 필요 </td> </tr> </tbody> </table>			비용 기준	비고	건당 100만원(VAT 별도) 이내 * 단, 출장비, 인쇄비 별도 협의 가능	복수의 조합에서 공동투자 한 기업의 경우 공동으로 실사 진행 및 비용 분담 가능 * 단, 실사보고서에 조합별 투자 금액에 대한 실사 내용 구분 표기 필요																																					
비용 기준	비고																																										
건당 100만원(VAT 별도) 이내 * 단, 출장비, 인쇄비 별도 협의 가능	복수의 조합에서 공동투자 한 기업의 경우 공동으로 실사 진행 및 비용 분담 가능 * 단, 실사보고서에 조합별 투자 금액에 대한 실사 내용 구분 표기 필요																																										

가이드라인 상 목차	주요 개정 내용		개정 사유																
	현행	개정안																	
	<p><투자금 실사관련 투자계약서 의무기재사항 예시> (예시3) 투자금액 사용처 실사 피투자기업은 투자자의 요청으로 투자자가 지명하는 회계감사인으로부터 투자금 납입일로부터 1년 이내에 투자금액 사용처 실사를 받아야 한다.</p>	<p><투자금 실사관련 투자계약서 의무기재사항 예시> (예시3) 투자금액 사용처 실사 투자기업은 투자자의 요청으로 투자자가 지명하는 회계감사인으로부터 투자금 납입일로부터 1년 이내에 투자금액 사용처 실사를 받아야 한다. 투자자가 집행된 후 1년 이내에 투자금을 소진하지 못하는 경우, 기한을 최대 1년 연기하여 집행된 후 2년 이내에 투자금액 사용처 실사를 받아야 한다.</p>	- 기준규약 반영																
9. 자펀드 운용인력 변경처리 및 관리보수 삭감 기준	<p>① 기본 방향 (예시) 2019년 출자사업 공고문상 인력구성 요건</p> <table border="1"> <thead> <tr> <th>조합 규모</th> <th>최소 인력 구성</th> </tr> </thead> <tbody> <tr> <td>300억원 이하 (2017년 이전은 200억원 이하)</td> <td>2</td> </tr> <tr> <td>300억원 초과 ~ 800억원 이하 (2017년 이전은 200억원 초과~800억원 이하)</td> <td>3</td> </tr> <tr> <td>800억원 초과</td> <td>4</td> </tr> </tbody> </table> <p>* 창업투자조합 및 한국벤처투자조합의 경우 대표펀드매니저는 소관 법령에 따른 전문인력이어야 함</p> <p>③ 관리보수의 삭감</p>	조합 규모	최소 인력 구성	300억원 이하 (2017년 이전은 200억원 이하)	2	300억원 초과 ~ 800억원 이하 (2017년 이전은 200억원 초과~800억원 이하)	3	800억원 초과	4	<p>① 기본 방향 (예시) 2021년 출자사업 공고문상 인력구성 요건</p> <table border="1"> <thead> <tr> <th>조합 규모</th> <th>최소 인력 구성</th> </tr> </thead> <tbody> <tr> <td>300억원 이하 (2017년 이전은 200억원 이하)</td> <td>2</td> </tr> <tr> <td>300억원 초과 ~ 800억원 이하 (2017년 이전은 200억원 초과~800억원 이하)</td> <td>3</td> </tr> <tr> <td>800억원 초과</td> <td>4</td> </tr> </tbody> </table> <p>* 벤처투자조합의 경우 대표펀드매니저는 소관 법령에 따른 전문인력이어야 함</p> <p>③ 관리보수의 삭감 (신설) - 이외 삭감 시 적용되는 고려요소 : 의무투자금액, 배분총액</p>	조합 규모	최소 인력 구성	300억원 이하 (2017년 이전은 200억원 이하)	2	300억원 초과 ~ 800억원 이하 (2017년 이전은 200억원 초과~800억원 이하)	3	800억원 초과	4	- 개정법령 반영 - 관리보수 삭감을 산정 시 반영 요소 공개
조합 규모	최소 인력 구성																		
300억원 이하 (2017년 이전은 200억원 이하)	2																		
300억원 초과 ~ 800억원 이하 (2017년 이전은 200억원 초과~800억원 이하)	3																		
800억원 초과	4																		
조합 규모	최소 인력 구성																		
300억원 이하 (2017년 이전은 200억원 이하)	2																		
300억원 초과 ~ 800억원 이하 (2017년 이전은 200억원 초과~800억원 이하)	3																		
800억원 초과	4																		

[Part1 : 공통사항] III. 투자 및 사후관리

가이드라인 상 목차	주요 개정 내용		개정 사유																
	현행	개정안																	
1. 투자 전(前) 확인사항	<p>(참고) 특수관계자외의 거래 (창업지원법 시행령 제10조 5항)</p>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width: fit-content;"> 특수관계인 및 주요 출자자 등에게 ①투자하거나 그가 발행한 증권을 소유하는 행위, ② 신용공여 행위, ③ 기타 중기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행위를 말함 </div>	<p>(참고) 특수관계자외의 거래 (벤처투자법 시행령 제36조)</p>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조합의 보유 자산을 매각하는 행위 또는 조합의 재산으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발행하거나 소유한 주식 또는 지분을 매입하는 행위 가. 해당 업무집행조합원 나. 해당 업무집행조합원의 임직원과 그 배우자 다. 해당 업무집행조합원의 주요주주와 그 배우자 라. 해당 업무집행조합원의 계열회사.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열회사는 제외한다. 1) 해당 업무집행조합원이 운영하는 벤처투자조합이 투자한 기업 2) 그 밖에 벤처투자조합과 그 조합원의 이익 및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투자목적회사 등 법인 또는 단체 마. 해당 벤처투자조합의 주요출자자 및 그 계열회사 바. 해당 업무집행조합원이 업무집행조합원 또는 업무집행사원인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합 또는 집합투자기구 1) 개인투자조합 2) 벤처투자조합 3) 기업구조개선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 4)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 </div>	- 개정법령 반영																
2. 투자심의위원회 운영	<p>2. 의무투자 기준</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 style="width: 15%;">구분</th> <th style="width: 85%;">주요 내용</th> </tr> </thead> <tbody> <tr> <td>인정투자</td> <td>· 창업투자조합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1조 3항에서 정하는 투자(등록 이후 3년 동안 약정총액의 40%) · 그 외 : 해당 없음</td> </tr> <tr> <td>주목적투자</td> <td>· 규약 제31조(투자의 방법) 1항 혹은 2항 등에 규정된 조합의 투자의무비율 대상 투자</td> </tr> <tr> <td>특수목적투자</td> <td>· 규약 제54조(특약사항)에 규정된 조합의 특수목적 투자의무비율 대상 투자</td> </tr> </tbody> </table> <p>* 주목적투자 및 특수목적투자 기준은 규약에 따라 상기 내용과 다소 상이할 수 있음</p>	구분	주요 내용	인정투자	· 창업투자조합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1조 3항에서 정하는 투자 (등록 이후 3년 동안 약정총액의 40%) · 그 외 : 해당 없음	주목적투자	· 규약 제31조(투자의 방법) 1항 혹은 2항 등에 규정된 조합의 투자의무비율 대상 투자	특수목적투자	· 규약 제54조(특약사항) 에 규정된 조합의 특수목적 투자의무비율 대상 투자	<p>2. 의무투자 기준</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 style="width: 15%;">구분</th> <th style="width: 85%;">주요 내용</th> </tr> </thead> <tbody> <tr> <td>인정투자</td> <td>· 벤처투자법 제51조에서 정하는 투자</td> </tr> <tr> <td>주목적투자</td> <td>· 규약 “투자의 방법” 조항 등에 규정된 조합의 투자의무비율 대상 투자</td> </tr> <tr> <td>특수목적투자</td> <td>· 규약 “기타 특약사항” 조항에 규정된 조합의 특수목적 투자의무비율 대상 투자</td> </tr> </tbody> </table> <p>* 주목적투자 및 특수목적투자 기준은 규약에 따라 상기 내용과 다소 상이할 수 있음</p>	구분	주요 내용	인정투자	· 벤처투자법 제51조에서 정하는 투자	주목적투자	· 규약 “투자의 방법” 조항 등에 규정된 조합의 투자의무비율 대상 투자	특수목적투자	· 규약 “기타 특약사항” 조항 에 규정된 조합의 특수목적 투자의무비율 대상 투자	- 개정법령 반영
구분	주요 내용																		
인정투자	· 창업투자조합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1조 3항에서 정하는 투자 (등록 이후 3년 동안 약정총액의 40%) · 그 외 : 해당 없음																		
주목적투자	· 규약 제31조(투자의 방법) 1항 혹은 2항 등에 규정된 조합의 투자의무비율 대상 투자																		
특수목적투자	· 규약 제54조(특약사항) 에 규정된 조합의 특수목적 투자의무비율 대상 투자																		
구분	주요 내용																		
인정투자	· 벤처투자법 제51조에서 정하는 투자																		
주목적투자	· 규약 “투자의 방법” 조항 등에 규정된 조합의 투자의무비율 대상 투자																		
특수목적투자	· 규약 “기타 특약사항” 조항 에 규정된 조합의 특수목적 투자의무비율 대상 투자																		
4. 피투자기업 사후관리	<p>o 기타 추가 보고사항</p> <p>(1) 피투자기업 고용인원을 VICS를 통해 입력하고, 개인정보가 포함되지 않은 4대 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를 첨부하여 보고 (보고시기 : 매 반기 말로부터 7일 이내)</p>	<p>o 기타 추가 보고사항</p> <p>(1) 피투자기업 고용인원을 VICS를 통해 입력하고, 개인정보가 포함되지 않은 4대 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를 첨부하여 보고 (보고시기 : 매 분기 말로부터 7일 이내)</p>	- 기준규약 반영																

[Part2 : 문화콘텐츠 분야] I. 목적 및 적용범위

(개정사항 없음)

[Part2 : 문화콘텐츠 분야] II. 문화·콘텐츠 자펀드 운용

가이드라인 상 목차	주요 개정 내용						개정 사유
	현행			개정안			
2. 주요 출자자 및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과의 거래	구분	주요출자자와 거래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과 거래	구분	주요출자자와 거래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과 거래	- 개정법령 반영
		용어의 정의	<p>‘주요출자자’라 함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본인 및 그 특수관계인이 누구의 명의로 하든지 자기의 계산으로 출자총액의 100분의 10 이상의 출자지분을 소유한 경우 그 본인인 출자자를 말함 (시행령 제10조 제4항) 	<p>‘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지정, 발표 	용어의 정의	<p>‘주요출자자’라 함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본인 및 그 특수관계인이 누구의 명의로 하든지 자기의 계산으로 출자총액의 100분의 10 이상의 출자지분을 소유한 경우 그 본인인 출자자를 말함 (벤처투자법 시행령 제8조 제2항 제3호의 ‘라’목) 	
	‘주요출자자와 거래’라 함 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과 거래’ 라 함은	‘주요출자자와 거래’라 함 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과 거래’ 라 함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프로젝트 투자의 경우 주요출자자가 직접 제작하는 프로젝트에 대해 투자하는 행위를 말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프로젝트 투자의 경우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이 직접 제작하는 프로젝트에 대해 투자하는 행위를 말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프로젝트 투자의 경우 주요출자자가 직접 제작하는 프로젝트에 대해 투자하는 행위를 말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프로젝트 투자의 경우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이 직접 제작하는 프로젝트에 대해 투자하는 행위를 말함 			

[Part2 : 문화콘텐츠 분야] III. 프로젝트 투자

가이드라인 상 목차	주요 개정 내용		개정 사유
	현행	개정안	
1. 프로젝트 투자의 정의	<p>○ 프로젝트 투자에 대한 정의는 ‘창업투자회사 등의 등록 및 관리규정’ 제7조의 2에서 규정</p> <p style="text-align: center;"><창업투자회사 등의 등록 및 관리규정></p> <p>제7조의2(프로젝트투자)</p> <p>① 규칙 제9조 제2호에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고시하는 분야”라 함은 다음을 말하며, 법 제10조 제1항 제5호의 방식으로 동 분야에 투자하는 행위를 “프로젝트 투자”라 하고, “프로젝트 투자”의 투자 대상에 해당되는 사업을 “프로젝트”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신제품 및 신기술 개발(총비용중 연구개발비용이 50%이상인 경우) 2. 문화산업진흥기본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문화산업 3. 발명진흥법에 의한 산업재산권의 창출·매입·활용 4. 스포츠산업진흥법에 의한 스포츠산업 5. 관광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프로젝트 투자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6. 기타 패션디자인 등 중소기업부장관이 프로젝트투자에 적합하다고 인정한 사업 	<p>○ 프로젝트 투자에 대한 정의는 ‘벤처투자법 시행규칙’ 제2조에서 규정</p> <p style="text-align: center;"><벤처투자법 시행규칙></p> <p>제2조(중소기업이 개발·제작하는 사업에 대한 투자)</p> <p>①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다목에서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 지분인수”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한 지분인수(이하 “프로젝트 투자”라 한다)를 말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신제품 및 신기술 개발(총사업비용 중 연구개발비용이 50퍼센트 이상인 경우로 한정한다) 2. 「문화산업진흥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문화산업 3. 「발명진흥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산업재산권의 창출·매입·활용 4. 「스포츠산업진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포츠산업 5. 관광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프로젝트 투자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6. 그 밖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준하는 사업으로서 중소기업부장관이 프로젝트 투자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개정법령 반영
2. 해외 프로젝트 투자	<p>○ 창업투자회사 등의 등록 및 관리규정 제3조에 따라 해외 프로젝트 투자가 가능함</p> <p style="text-align: center;"><창업투자회사 등의 등록 및 관리규정></p> <p>제3조(투자대상 및 방법 등)</p> <p>① 법 제10조 제1항 제4호에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는 방법에 따른 해외투자”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식으로 투자하는 것을 말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해외 기업에 대한 주식 또는 지분의 인수 2. 해외 기업이 발행하는 무담보주식연계형 채권의 인수 3. 해외 기업이 제작하고 국내 중소기업이 제작에 참여하거나 참여하기로 약정되었으며, 제작 분야가 문화산업(「문화산업진흥기본법」 제2조 제1호의 문화산업을 말한다.)인 제7조의 2 제1항 규정에 의한 프로젝트 투자 4. 생략 	<p>○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등록 및 관리규정 제3조에 따라 해외 프로젝트 투자가 가능함</p> <p style="text-align: center;"><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등의 등록 및 관리규정></p> <p>제3조(투자대상 및 방법 등) 법 제37조제1항제5호에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에 따른 해외투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식의 투자를 말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해외 기업의 주식 또는 지분의 인수 2. 해외 기업이 발행하는 무담보전환사채, 무담보교환사채 또는 무담보신주인수권부사채의 인수 3. 해외 기업이 제작하고 국내 중소기업이 제작에 참여하거나 참여하기로 약정되었으며, 규칙 제2조에 따른 프로젝트 투자 4. 해외투자기구(벤처투자조합과 유사한 방법으로 타인의 자금을 모집하여 설립된 조합 또는 회사)에 대한 출자 5. 법 제2조제1호라목에 따른 조건부지분인수계약을 통한 해외기업의 지분 인수 	- 개정법령 반영

[Part2 : 문화콘텐츠 분야] IV. 프로젝트 투자 사후관리
(개정사항 없음)

[FAQ]

가이드라인 상 목차	주요 개정 내용			개정 사유						
	현행				개정안					
FAQ 1	<table border="1"> <thead> <tr> <th>순번</th> <th>질문</th> <th>답변</th> </tr> </thead> <tbody> <tr> <td>3</td> <td>창업투자조합의 코넥스 기업 또는 제작 프로젝트 투자가 창업지원법상 인정투자에 해당하나요?</td> <td>인정투자에 해당합니다.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시행규칙 제9조 참조)</td> </tr> </tbody> </table>	순번	질문	답변	3	창업투자조합의 코넥스 기업 또는 제작 프로젝트 투자가 창업지원법상 인정투자에 해당하나요?	인정투자에 해당합니다.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시행규칙 제9조 참조)	(삭제)	- 개정법령 반영	
순번	질문	답변								
3	창업투자조합의 코넥스 기업 또는 제작 프로젝트 투자가 창업지원법상 인정투자에 해당하나요?	인정투자에 해당합니다.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시행규칙 제9조 참조)								
FAQ 4	<table border="1"> <thead> <tr> <th>순번</th> <th>질문</th> <th>답변</th> </tr> </thead> <tbody> <tr> <td>4</td> <td>창업지원법상 인정투자로 인정되는 프로젝트 투자 분야는 무엇인가요?</td> <td>창업투자회사 등의 등록 및 관리규정 '제7조의2(프로젝트투자)에 열거된 분야에 한합니다.</td> </tr> </tbody> </table>	순번	질문	답변	4	창업지원법상 인정투자로 인정되는 프로젝트 투자 분야는 무엇인가요?	창업투자회사 등의 등록 및 관리규정 '제7조의2(프로젝트투자)에 열거된 분야에 한합니다.	(삭제)	- 개정법령 반영	
순번	질문	답변								
4	창업지원법상 인정투자로 인정되는 프로젝트 투자 분야는 무엇인가요?	창업투자회사 등의 등록 및 관리규정 '제7조의2(프로젝트투자)에 열거된 분야에 한합니다.								
FAQ 18	<table border="1"> <thead> <tr> <th>순번</th> <th>질문</th> <th>답변</th> </tr> </thead> <tbody> <tr> <td>18</td> <td>피투자기업 투자금 실사는 조합 회계감사인만 진행할 수 있나요?</td> <td>조합원총회를 통해 선정한 회계법인이 실사를 진행하는 것이 원칙이나, 해당 회계법인의 일정이나 동반투자 후 비용절감 등의 문제로 진행이 어렵다면 동 가이드라인 4페이지의 자격요건을 갖춘 회계법인으로 투자금 실사를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td> </tr> </tbody> </table>	순번	질문	답변	18	피투자기업 투자금 실사는 조합 회계감사인만 진행할 수 있나요?	조합원총회를 통해 선정한 회계법인이 실사를 진행하는 것이 원칙이나, 해당 회계법인의 일정이나 동반투자 후 비용절감 등의 문제로 진행이 어렵다면 동 가이드라인 4페이지의 자격요건을 갖춘 회계법인으로 투자금 실사를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삭제)	- 기준규약 반영	
순번	질문	답변								
18	피투자기업 투자금 실사는 조합 회계감사인만 진행할 수 있나요?	조합원총회를 통해 선정한 회계법인이 실사를 진행하는 것이 원칙이나, 해당 회계법인의 일정이나 동반투자 후 비용절감 등의 문제로 진행이 어렵다면 동 가이드라인 4페이지의 자격요건을 갖춘 회계법인으로 투자금 실사를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FAQ 13		(신설)	<table border="1"> <thead> <tr> <th>순번</th> <th>질문</th> <th>답변</th> </tr> </thead> <tbody> <tr> <td>13</td> <td>조합의 설립일 또는 해산만기일이 월중에 속해 있을 때에 1개월 이내 기간에 한해 1년을 초과할 수 있나요?</td> <td>12월 결성(결성총회일 기준) 조합은 다음 사업연도의 회계감사에, 1월 해산조합(해산총회일 기준)은 이전 사업연도의 회계감사에 포함하여 회계감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td> </tr> </tbody> </table>	순번	질문	답변	13	조합의 설립일 또는 해산만기일이 월중에 속해 있을 때에 1개월 이내 기간에 한해 1년을 초과할 수 있나요?	12월 결성(결성총회일 기준) 조합은 다음 사업연도의 회계감사에, 1월 해산조합(해산총회일 기준)은 이전 사업연도의 회계감사에 포함하여 회계감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순번 수정 - 신설
순번	질문	답변								
13	조합의 설립일 또는 해산만기일이 월중에 속해 있을 때에 1개월 이내 기간에 한해 1년을 초과할 수 있나요?	12월 결성(결성총회일 기준) 조합은 다음 사업연도의 회계감사에, 1월 해산조합(해산총회일 기준)은 이전 사업연도의 회계감사에 포함하여 회계감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